



## THE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275 Seventh Avenue, 9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627-2227  
Fax: (212) 627-9314

### 이민자와 공공복지 혜택

다음의 내용은 이민자들이 궁금해 하는 공공복지혜택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므로, 이 판단에 담긴 내용이 각 개인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조언이 아님을 밝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뉴욕주 이민자핫라인(New York State Immigration Hotline, 1-800-566-763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란 누구를 말합니까?

‘정부구호대상자’는 본인의 생계를 일차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부구호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를 받거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각종 공공 보호 시설을 장기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거나 응급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정부구호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정부가 ‘정부구호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현 시민·이민서비스국(BCIS: 옛 이민국) 직원들은 ‘정부구호 대상자’를 결정할 때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보유 재산, 재정 상태, 교육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 고령, 그리고 정부가 한 개인에게 정부 보조를 해야만 하는 기타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정부구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공공 복지 혜택 프로그램이 ‘정부구호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까?

현금보조프로그램(TANF), 소셜시큐리티(SSA), 일반 현금보조(GA) 등 현금보조 프로그램과 정부의 비용 지출로 장기간 보호를 위해 각종 정부 공공 보호 시설 이용 프로그램 이용 여부에 근거해 정부가 ‘정부구호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구호대상자’ 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복지 혜택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메디케이드, 아동건강플러스(Child Health Plus), 가족건강플러스(Family Health Plus), 태아검진, 그리고 응급 처치를 포함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메디칼, 푸드 스탬프, 학교 급식, 기타의 식료품보조 프로그램, 재난 구호 프로그램, 탁아프로그램, 직업훈련, 대중교통이용 프로그램, 실직수당 등입니다.

#### 저의 가정에서는 제 아들만이 정부로부터 현금보조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제 자녀가 현금보조 프로그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부구호대상자’ 로 간주됩니까?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현금보조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정부구호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가정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자녀의 현금보조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의 가족들이 자녀의 현금보조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면 선생님은 ‘정부구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척을 이민 초청할 당시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에 서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민 초청자가 재정보증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서명자가 영주권 신청시 이민을 사람에 대한 재정 보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1997년 12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재정보증서(I-864)는 선생님이 이민 대상자에 대해 재정 보증을 하겠다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이전에 사용된 재정 보증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민자에 대한 재정 보증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 이민 초청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이민 초청 보증인(이민 스폰서)은 적어도 연방 최저빈곤선의 125%에 해당하는 연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방 최저 빈곤선은 가족 구성의 수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약 선생님의 연소득이 위의 규정에 못미친다면, 선생님은 위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공동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보증인이 될 사람은 반드시 이민 대상자에 대한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데 제 아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민 초청 보증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선생님의 연소득이 연방 최저빈곤선의 125% 미만이라면 선생님은 공동 보증인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친척들이 이민을 오는데 이민 초청 보증인이었습니다. 저에게 제 친척들이 이용한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정보증서(I-864)의 서명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이민 초청 보증인으로 이민은 친척들을 재정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선생님의 친척들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경우, 선생님의 정부의 비용 지출에 대해 배상해야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친척들이 일부 프로그램 - 예로, 응급 메디케이드, 임신모아동건강프로그램(WIC)을 이용한 경우, 선생님이 정부 비용 지출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스폰서 디밍(Sponsor Deeming)은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는 이민 초청 보증인의 연소득을 이민 대상자의 연소득에 더해 이민 대상자의 공공복지혜택 이용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러한 과정을 ‘스폰서 디밍’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밍’의 경우 재정 보증인이 실질적으로 초청 이민자들 도와주고 있지 않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디밍’과 ‘재정 보증인 책임 조항’은 오직 1997년 12월 이후의 재정보증서 (I-864)에 서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가 이민 초청 당시 재정 보증을 선 친척에 대해 얼마 동안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선생님의 친척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친척 본인 또는 친척의 배우자, 선생님의 친척이 18세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적어도 40분기 (1년이 4분기임) 동안 일을 했다면 선생님의 재정적 책임은 없게 됩니다.

**저는 난민으로 공공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가 저의 영주권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피난민이나 망명자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 건강, 식료품 보조, 기타 비현금 프로그램 등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해서 피난민이나 망명자의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용한 공공복지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갚아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문서 변조나 잘못된 정보 기재를 했을 경우 반드시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이용한 특정 정부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선생님의 이민 보증인은 변제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중입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나 아동으로 배우자나 부모가 비자를 신청중이거나 비자를 받았을 경우, 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본인 스스로 비자를 신청인 경우,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류미비자입니다. 제가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선생님께서는 ‘메디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저소득자라면, 선생님은 ‘응급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 이용할 수 있으며, 합법적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선생님의 자녀들은 뉴욕주 아동건강플러스(Child Health Plu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내 병원들은 저소득자들에게 비용급 의료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진료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저의 공공복지 혜택 수혜가 시민권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선생님이 합법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공공복지 혜택 프로그램 수혜 여부가 선생님의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부구호대상자’ 여부가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이민 초청해 제 어머니가 1년전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공공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뉴욕주의 경우, 선생님의 어머니는 메디케이드, 가족건강플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어머니는 미국에 온 첫 5년 동안 특정 공공복지 혜택 프로그램, 예로 소셜시큐리티(SSI),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마다 추가적인 금지 조항들이 선생님의 어머니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들은 매우 복잡하므로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전에 뉴욕주이민핫라인(1-800-566-7636)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